

(비공식 번역본)

투자위원회 고시

제15/2565호

스마트 산업과 지속가능한 산업 강화 방안

2022년 12월 8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8/2565호 투자촉진 정책과 기준과 관련하여, 태국 산업이 4차 산업,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게 개발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투자위원회는 불기2520년(1977년) 투자촉진법 제16조, 제18조, 제28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고시한다.

1. 기존 프로젝트의 효율성 향상 조치

- 1) 이 방안은 투자청 촉진 프로젝트인 경우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막론하고 기존 프로젝트에 대해 적용한다. 활동(프로젝트)은 신청 당시 투자위원회가 투자 촉진으로 지정한 활동에 부합해야 한다. 투자위원회에서 규정한 인센티브 수령이 불가능한 특정 조치에 따른 특정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가 발생한다.
- 2) 투자청 촉진 프로젝트는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기간이 종료될 때 또는 법인세 면제에 관한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프로젝트일 경우, 이 방안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 3)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자본은 백만 바트 이상이다. (토지대금과 운영 자금 제외)

1.1 기계 교체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 향상 방안

조건

- 1) 신청자는 기계 교체 또는 규정된 기준에 따른 업그레이드에 관한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예) 기존 생산 라인에 자동화 기계 또는 로봇을 도입하거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도입 등

- 2) 기계, 장비,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는 다음과 같다.

2.1) 기계와 장비에 관한 투자 또는 지출은 전액 계상된다.

2.2)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기술의 활용에 대한 투자 또는 지출,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데이터 센터의 임대/이용도 다음 규칙에 따라 포함한다.

(1) 다음의 투자와 지출은 전액 계상된다

- 제조 시스템 조작, 제어 및 지원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비와 통합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 또는 지출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또는 머신러닝, 빅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의 적용에 관한 투자 또는 지출
- 관련 기관의 인증을 받은 태국 내 기업가가 개발하거나 개선한 기업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투자 또는 지출
- 태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데이터센터 임대/사용에 관한 지출

(2) 다음의 투자 또는 지출은 절반만 계상된다.

- 관련 기관이 인증하지 않은 태국 내 기업 또는 해외 기업이 기업 관리를 위해 개발 또는 개선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투자 또는 지출
-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데이터센터 임대/사용에 대한 지출

인센티브

- 1) 기계에 관한 수입 관세 면제
- 2) 효율성 향상을 위한 투자금(토지 및 운전 자본 비용 제외)의 50% 한도로 기존 프로젝트 수익에 대해 3년간 법인세 면제

단, 태국 자동화 기계 제조 산업과 연계되어 교체한 기계 비용이 전체 자동화 시스템 가치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 투자금(토지대금과 운영경비 제외)의 100%에 대해 3년간법인소득세 면제를 부여한다.

- 3) 법인세 면제 기간은 투자촉진증 발급 후 수입이 발생한 날부터 시작되며, 프로젝트는 촉진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1.2 디지털 기술 도입 조건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방안

- 1) 신청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조업 또는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규정된 조건에 따른 운영 과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도입에 대해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1.1) 조직 내부(Integrated), 부분적으로 조직 외부(connected) 또는 조직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다양한 기능을 상호 연결하는 기능적 연결(systematic link)에 소프

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기술 도입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제조 또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3가지 기능을 수행하여, 이들 간의 데이터 링크를 형성해야 한다.

1.2) 인공지능(AI), 머신러닝을 적용하고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의 활용해야 한다.

1.3) 회사 시스템과 공공 부문의 온라인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교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 기술의 채택 (예: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국가 전자 결제 시스템과의 연결 등)

2) 1.1)과 1.3)번의 경우, 관련 기관의 인증을 받은 태국 국내 사업자가 개발 또는 개선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기술 사용에 관한 투자 또는 지출이 있어야 한다.

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성 향상에 대한 투자액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해 계상된다.

3.1) 다음의 투자와 지출은 전액 계상된다.

(1) 관련 기관의 인증을 받은 태국 기업가가 개발하거나 개선한 1.1)번 및 1.3)번에

따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 기술 활용에 대한 투자 또는 지출

(2) 1.2)번에 따른 인공지능(AI), 기계학습, 빅데이터 및 데이터분석 활용에 대한 투자 또는 지출

(3) 태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데이터센터를 임대/사용하는데 쓰는 지출

3.2) 다음의 투자와 지출은 반액만 계상된다.

(1) 관련 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태국 기업가 또는 외국 기업가가 개발 또는 개선한 1.1)번과 1.3)번에 따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 기술 활용에 대한 투자 또는 지출

(2) 해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나 데이터센터를 임대/이용하는데 드는 비용

인센티브

1) 효율성 향상을 위한 투자금(토지 및 운전 자본 비용 제외)의 50%에 해당하는 한도로 기존 프로젝트 수익에 대해 3년간 법인세 면제

- 2) 법인세 면제 기간은 투자촉진증 발급 후 수입이 발생한 날부터 시작되며, 프로젝트는 촉진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1.3 4차산업(Industry 4.0)으로의 전환을 위한 효율성 향상 방안

조건

- 1) 신청자는 국가과학기술개발원(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 NSTDA)의 인증을 받은 4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효율성 향상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프로젝트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완전히 실행되어야 한다.
- 2) 프로젝트는 기존 제조 또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및 네트워크 기술의 구현, 데이터 분석 및 스마트 운영 또는 생산 및 기업 관리에서 디지털 기술 채택 등과 같은 규정된 기준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계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에 투자해야 한다.
- 3)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효율성 향상의 투자금은 기계, 장비, 자동화 및 네트워크 기술의 구현을 위한 디지털 기술, 데이터 분석 및 스마트 운영, 생산과 기업 관리에서 디지털 기술 채택에 대한 투자만 계상된다.
 - 3.1) 기계와 장비에 대한 투자와 지출은 전액 계상된다.
 - 3.2)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기술의 활용,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데이터 센터의 임대/사용에 대한 투자 또는 지출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계상된다.
 - (1) 다음의 투자와 지출은 전액 계상된다.
 - 제조 시스템의 조정, 제어, 지원을 위한 기계 또는 설비와 통합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 기술의 활용에 대한 투자 또는 지출
 - 인공지능(AI)이나 머신러닝의 적용,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 또는 지출
 - 관련 기관의 인증을 받은 태국 기업가가 개발하거나 개선한 기업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 기술 활용에 대한 투자 또는 지출
 - 태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데이터 센터의 임대/사용에 대한 지출
 - (2) 다음의 투자 또는 지출은 반액만 계상된다.

- 관련 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태국 기업 또는 외국 기업이 개발 또는 개선한 기업 관리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 기술의 활용에 대한 투자 또는 지출
- 해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나 데이터센터를 임대/이용하는데 드는 비용

인센티브

- 1) 기계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 2) 개선을 위한 투자금(토지 비용 및 운전 자본 비용 제외)의 100%에 해당하는 한도로 기존 프로젝트 수익에 대해 3년간 법인세 면제
- 3) 법인세 면제 기간은 투자촉진증 발급 후 수입이 발생한 날부터 시작되며, 프로젝트는 촉진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1.4 에너지 절약, 대체 에너지 활용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성 향상 조치

조건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하여 에너지 절약, 대체 에너지 활용 또는 환경 영향 완화를 위한 기계 대체 또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1) 프로젝트는 규정된 비율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현대 기술로 기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 2) 프로젝트는 전체 에너지 소비 대비 규정된 비율로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기계 업그레이드에 투자해야 한다.
- 3) 프로젝트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폐기물, 폐수 또는 오염된 공기를 줄이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기계 업그레이드에 투자해야 한다.
- 4) 프로젝트는 규정된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기계 업그레이드에 투자해야 하며, 태국 온실가스 관리 기구(공공기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등록 및 인증받아야 한다.

인센티브

- 1) 기계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 2) 개선을 위한 투자금(토지 비용 및 운전 자본 비용 제외)의 50%에 해당하는 한도로

기존 프로젝트 수익에 대해 3년간 법인세 면제

- 3) 법인세 면제 기간은 투자촉진증 발급 후 수입이 발생한 날부터 시작되며, 프로젝트는 촉진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1.5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 획득이 가능하도록 생산라인 개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성 강화 방안

조건

프로젝트는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e Practices), 산림관리협회(FSC : Forest Stewardship Council), 국제산림인증연합프로그램 (PEFC : Program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cheme), 식품안전경영시스템(Food Safety Management System)(ISO 22000) 또는 지속 가능한 삼림 관리 시스템(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ystem, ISO 14061) 등과 같은 국제 지속 가능성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산업 개선에 대한 투자 또는 지출이 있어야 한다.

인센티브

- 1) 기계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 2) 개선을 위한 투자금(토지 비용 및 운전 자본 비용 제외)의 50%에 해당하는 한도로 기존 프로젝트 수익에 대해 3년간 법인세 면제
- 3) 법인세 면제 기간은 투자촉진증 발급 후 수입이 발생한 날부터 시작되며, 프로젝트는 촉진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2. B 그룹 활동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산업 고도화 조치

이 방안의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 투자위원회가 정한 투자촉진 대상에 부합하는 B 그룹 목록에 해당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여야 한다.

2.1 자동화 또는 로봇 시스템과 함께 현대 기계를 활용하기 위한 산업 고도화 방안

조건

- 1) 신청 기업들은 생산 라인이나 서비스에서 자동화 또는 로봇 시스템과 함께 제조/서비스용 현대 기계를 활용하는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2) 기계, 장비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액은 다음과 같이 계상된다.

2.1) 기계와 장비에 대한 투자 및 지출은 전액 계상된다.

2.2)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데이터 센터 임대/사용에 대한 투자 및 지출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계상된다.

(1) 다음의 투자 또는 지출은 전액 계상된다.

- 제조 시스템 조작, 제어 및 지원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비와 통합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 또는 지출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또는 머신러닝 및 빅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의 적용에 관한 투자 또는 지출
- 관련 기관의 인증을 받은 태국 내 기업가가 개발하거나 개선한 기업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투자 또는 지출
- 태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데이터센터 임대/사용에 관한 지출

(2) 다음의 투자 또는 지출은 반액만 계상된다.

- 관련 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태국 기업 또는 외국 기업이 개발 또는 개선한 기업 관리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 기술의 활용에 대한 투자 또는 지출
- 해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나 데이터센터를 임대/이용하는데 드는 비용

인센티브

- 1) 생산라인 또는 서비스에 자동화 시스템 또는 로봇을 사용하는 경우, 신청자는 투자금(토지 비용과 운전자금 제외)의 50%에 한해 법인소득세를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 2) 태국 자동화 기계 생산 산업과 연계되어 교체한 기계 비용이 전체 자동화 시스템 가치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 투자금(토지대금과 운영경비 제외)의 100%에 대해 3년간 법인소득세 면제를 부여한다.

2.2 4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 향상 방안

조건

- 1) 신청자는 신청자는 국가과학기술개발원(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 NSTDA)의 인증을 받은 4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입한 투

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프로젝트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완전히 실행되어야 한다.

- 2) 4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금액은 기계, 장비, 자동화 및 네트워크 기술의 구현을 위한 디지털 기술, 데이터 분석 및 스마트 운영, 생산과 기업 관리에서 디지털 기술 도입에 대한 투자만 계상된다.

2.1) 기계와 장비에 대한 투자와 지출은 전액 계상된다.

2.2)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기술의 활용,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데이터 센터의 임대/사용에 대한 투자 또는 지출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계상된다.

(1) 다음의 투자와 지출은 전액 계상된다.

- 제조 시스템의 조정, 제어, 지원을 위한 기계 또는 설비와 통합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 기술의 활용에 대한 투자 또는 지출
- 인공지능(AI)이나 머신러닝의 적용,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 또는 지출
- 관련 기관의 인증을 받은 태국 기업가가 개발하거나 개선한 기업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 기술 활용에 대한 투자 또는 지출
- 태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데이터 센터의 임대/사용에 대한 지출

(2) 다음의 투자 또는 지출은 반액만 계상된다.

- 관련 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태국 기업 또는 외국 기업이 개발 또는 개선한 기업 관리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 기술의 활용에 대한 투자 또는 지출
- 해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나 데이터센터를 임대/이용하는데 드는 비용

인센티브

4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금(토지 비용 및 운전 자본 비용 제외)의 100%에 해당하는 한도로 기존 프로젝트 수익에 대해 3년간 법인세 면제

본 고시는 2023년 1월 23일부터 유효하다.

고시일 2022년 12월 8일

쁘라윛 짬오차 장군

(Prayut Chan-o-cha)

총리

투자위원회 위원장